

스마트폰 수험총서

공부혁명 엠북(mbook.kr)

MEDICAL CARE & HEALTHY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최근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
- ☆ 22분 완성
- ☆ 병원행정사 시험 등 대비
- ☆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

도서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ISBN : 979-11-7393-320-2

발간일 : 2026-07-29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3,500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목차]

제1절 총칙(p4)

제2절 안전관리(p7)

제3절 보칙(p38)

[약어]

시군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법은 의료법

개설자등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장치/시설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제1절 총칙

1조, 2조

1. 목적

-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해,
-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2. 정의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

1) 진단용 엑스선장치

2)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3)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4)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 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포함

5) 유방촬영용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나. 방사선 방어시설(이하 방어시설)은 방사선 피폭 방지를 위해 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 피폭은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이하 종사자)는 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장치 관리, 운영, 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

라. 안전관리

- 장치/시설, 암실, 현상기, 방사선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사진 관찰대 등 진단 영상정보 설비 관리
- 종사자 피폭관리

마. 방사선구역은 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3mSv(3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된 곳

바. 기타

- **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질병검사 하는 지방병무청,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보건실, 교정시설 포함

제2절 안전관리

3~14조

1. 신고

가. 개설자등은 장치 설치시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 중지시 중지 3일내,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시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폐기/이전시 그 사유 발생 45일내 의료기관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 제출 요
- 의료기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은 제외

1)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첨부 서류(각 1부)

- a) 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 b)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 c) 종사자 신고서
- d) 양도, 이전한 자의 양도신고증명서나
이전신고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해
설치시만 첨부)
- e)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특수의료장비 설치시만 첨부)
- f) 장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시만 첨부)
- g) 의료기기 제조허가증이나 수입허가증
사본(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때는 제외)
- h)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때는

제외)

2)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첨부
서류

a) 신고증명서 원본

b) 양도신고시 양도/양수, 폐기신고시 폐기,
이전신고시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시군구는

- 신고받은 때 신고증명서 발급 요

- 발급받은 자가 훼손,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시 재발급 요